
장기요양기관 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2016. 12.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목 차

1. 추진배경	1
2. 장기요양기관 실태 점검결과	
< 점검결과 개요 >	2
가. 취약한 장기요양시장 구조(제도 분야)	2
나.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담청구·회계 불투명(공급 분야)	4
다. 수급자 확대 및 장기요양기관 정보부족(이용 분야)	7
라.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부실(감독 분야)	9
3. 장기요양기관 종합 개선방안	
< 종합 개선방안 개요 >	10
가. 「장기요양기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11
나. 정보공개 확대로 자율개선 유도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12
다. 선제적 관리감독 강화로 시설 난립 방지 및 서비스 제고	13
라.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를 통한 수급자 권익보호	15
4. 제도개선 방안 세부 추진일정(안)	16

I. 추진배경

- '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과 이용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 장기요양기관 '08년 8천개→'15년 1만8천개(116.4%↑), 이용자 '08년 15만명 → '15년 48만명(217.6%↑), 연간 보험금 '08년 4천억원 → '15년 3조9천억원(875%↑)
- 그러나, 재정비리와 시설 내 노인학대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부족한 상황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전통적 가족관계의 변화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기초지자체(이하 '지자체'), 식약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보)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제도·공급·이용·감독 분야로 나누어 종합점검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요>

- ▶ (대상자) ①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등급판정위원회(건보)에서 수급자로 등급(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 ▶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6년 6.55%)을 곱한 금액
 - 국고지원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는 이용비용의 20%, 재가급여는 이용비용의 15%
 - * 다만, 기타의료급여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 50% 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 (급여유형)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루 중 일정 시간에만 시설에서 보호
 -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6개 유형
 - 시설급여 : 수급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
 - * 노인요양시설(정원 1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9인 이하)
 - 현금특별급여 : 가족요양비(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 천재지변, 또는 신체·정신적 요인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지급)

II. 장기요양기관 실태 점검결과

- ◆ 부당청구 의심 장기요양기관 681개를 선정·점검 결과, 523개 시설(76.8%)에서 총 1,039건의 위법행위 적발
 - 부당청구 941건(158억원),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 85건, 식품위생 불량 13건 등
 - 397개 시설 행정처분 완료(지정취소·폐쇄 4, 업무정지 175, 과징금 30, 경고 8, 조치제외[부당청구 소액] 180), 126개 시설 진행중(32개 시설 수사의뢰)

1 취약한 장기요양시장 구조(제도 분야)

가. 점검결과

(1)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¹⁾ 43.7% 부실우려

□ 장기요양기관의 43.7%(11,773개 중 5,154개)가 평가등급이 낮은 부실우려 요양기관²⁾으로 분석

○ 입소시설 42.6%(3,623개 중 1,544개), 재가시설 44.3%(8,150개 중 3,610개)

<'14~'15년 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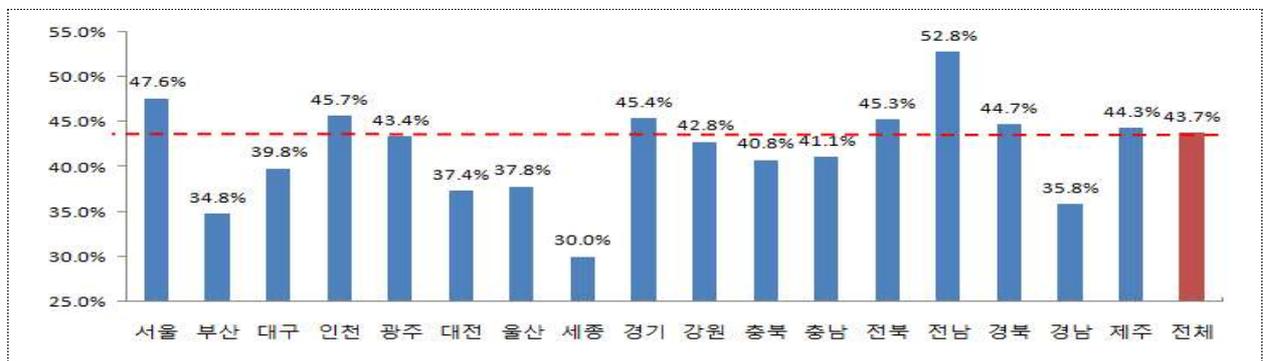
(단위 : 개)

구분	평가등급					합계
	A	B	C	D	E	
입소시설('15년)	509 14.0%	739 20.4%	831 22.9%	697 19.2%	847 23.4%	3,623 100.0%
재가시설('14년)*	1,090 13.4%	1,692 20.8%	1,758 21.6%	1,639 20.1%	1,971 24.2%	8,150 100.0%
합계	1,599	2,431	2,538	2,336	2,818	11,773
%	13.6%	20.6%	22.0%	19.8%	23.9%	100.0%

* '14년까지 상대평가 → '15년 절대평가(구간별 점수를 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분류)

□ 17개 광역시·도별 부실 우려 요양기관

○ 전남 52.8%, 서울 47.6%, 인천 45.7%, 경기 45.4%, 전북 45.3% 順



1)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등록 장기요양기관 중 운영중인 입소·재가시설을 번갈아 가며 운영실태를 평가하며, '15년 입소시설 (3,623개 대상), '14년 재가시설(8,150개 대상) 평가자료 활용

2) 정기평가 5등급(A·B·C·D·E) 중 E등급(재평가 의무대상) 및 D(최하위보다 한등급 위로 건보의 방문지도 대상)

(2) 휴업·휴면 요양기관 등 산재

- '16.8월말 등록 요양기관(18,887개) 중 휴업 1.4%(263개), 수급자 없이 휴면³⁾중 17.2%(3,249개) 등 18.6%(3,512개)가 미운영 중
- 최근 5년간('11년~'15년) 전년말 대비 연평균 18.1%(2,793개) 신설, 15.8%(2,428개) 휴·폐업

<장기요양기관 현황('16.8월)>

(단위 : 개)

구분	등록 기관수	운영상태		
		운영중	휴업중	휴면중
입소	5,158	4,937(95.7%)	53(1.0%)	168 (3.3%)
재가	13,729	10,438(76.0%)	210(1.5%)	3,081(22.4%)
전체	18,887	15,375(81.4%)	263(1.4%)	3,249(17.2%)

나. 문제점

(1) 장기요양기관 설립은 용이하나 퇴출은 어려운 구조

- 장기요양기관은 지자체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나 시설·인력요건만 갖추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설립용이
- 반면, 평가거부, 장기 급여비용 미청구 등 부실우려 시설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 부재로 선제적인 퇴출은 어려운 상황

(2) 규제미비로 업무정지 시 편법으로 영업 가능

- 장기요양기관 간 수급자 이전에 제한이 없어, 지자체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요양기관을 새로 설립해 수급자를 이전하여 편법영업

※ 제도분야 주요 적발사례

- ▶ [사례①] 업무정지 시 요양기관 신설·수급자 편법이전 등
- ▶ [사례②] 수급자 이전 후 휴면기관 방치 등

3) 휴·폐업을 하지 않은 정상 등록 요양기관 중 수급자가 없어 건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요양기관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담청구 및 회계 불투명(공급 분야)

가. 점검결과

(1) 요양급여 부담청구

□ '16.1~8월 중 68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단속⁴⁾ 결과, 이중 74.9%인 510개 요양기관에서 158억원의 부담청구 적발

<'16.1~8월 중 부담청구 적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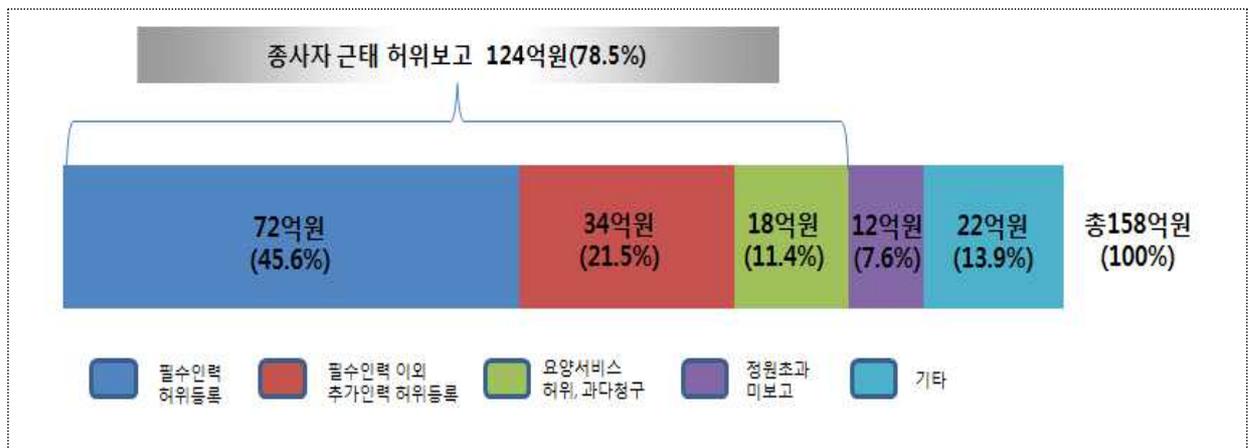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개, %)

구 분	현지조사 요양기관(A)	부담청구 요양기관(B)	비율(B/A)	
			비율(B/A)	부담금액
입소시설	293	207	70.6	10,816
재가시설	388	303	78.1	5,027
합계	681	510	74.9	15,844

○ 387개 시설 처분 완료(지정취소·폐쇄 4, 업무정지 165, 과징금 30, 경고 8, 조치제외 180*), 123개 시설 진행중(32개 요양기관 수사의뢰)

* 부담청구 금액이 소액(40만원 미만으로 부담청구 비율 1% 미만 등)으로 조치기준 이하

□ 유형별 부담청구 금액 현황



4) 복지부, 지자체, 건보가 공익신고, 건보 급여비용 심사결과 부담청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비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현지조사 실시. '16년 중 1,060개 장기요양기관 실시 예정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

- 현재 본인부담금 수납현황은 장기요양기관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 장기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더라도 건보에서 지급받는 급여비용만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불법 감면해 주고 수급자를 유치하는 사례 발생
 - 681개 조사대상 중 85개 기관(72개는 부당청구와 중복)은 본인부담금^{5),6)}을 불법 감면*하였고 이중 재가시설이 76개로 대부분, 수급자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대납하게 한 사례도 확인
 - * 13개 기관(부당청구 중복기관 제외) 조치현황 : 업무정지 10, 진행중 3
- 상당수 재가시설들이 본인부담금 미납금이 많은 상태로 관리중이나
 - 지자체는 불법감면이 의심되더라도 요양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한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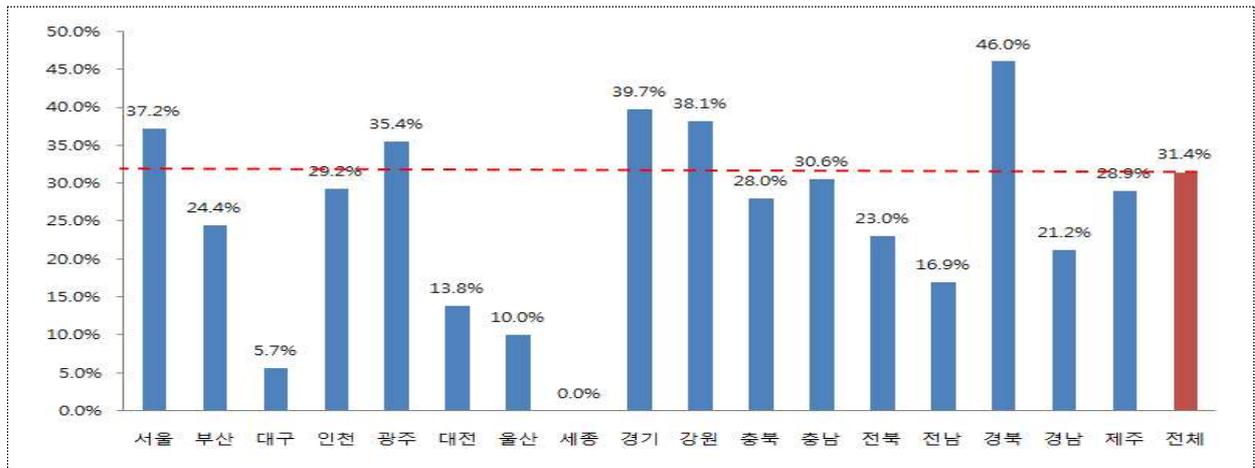
(3) 재무회계 제출의무 불이행

- 장기요양기관은 매월 3월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나, '15년도 의무대상 장기요양기관⁷⁾(6,111개)중 31.4%(1,920개) 미이행
 - 결산서 표본조사(150개)⁸⁾ 결과, 결산서 상 요양급여금액이 건보에서 지급한 요양급여액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 59개로 39.3% 차지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서비스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입소 20%, 재가 15%)를 부담
6) 요양기관이 법적 감경대상(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것은 위법으로서 행정처분(6개월 이내 업무정지) 대상
7)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재무회계기준 적용(노인장기요양법상 설립된 재가시설은 '17.5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적용 예정)
8) 현지조사시 부당청구 적발 요양기관 중 '1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기관

□ 17개 광역시·도별 결산서 제출의무 미이행률

- 경북 46.0%, 경기 39.7%, 강원 38.1%, 서울 37.2%, 광주 35.4% 順



나. 문제점

(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불투명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요양급여 제공기록 조작 및 종사자간 담합이 용이하여 부당청구 빈발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납부여부를 장기요양기관에서만 알고 있어 수급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 발생

(2) 재무회계 기준 미정착

- 장기요양기관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으나 결산서 제출여부·정확성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이 미흡하고 감사보고서, 법인세신고서는 전산이 아닌 수기 관리
- 장기요양기관에 회계전담직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교체가 잦아 전문성 부족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효성이 저하

※ **공급분야 주요 적발사례**

- ▶ [사례③] 친인척을 종사자로 허위등록 등
- ▶ [사례④] 동일 재단이 동일 건물에서 요양기관·병원 운영 등
- ▶ [사례⑤]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 허위 태그 등
- ▶ [사례⑥] 본인부담금 불법 면제 등

3 수급자 학대 및 장기요양기관 정보 부족(이용 분야)

가. 점검결과

(1) 입소시설 내 노인학대 지속 발생

□ 최근 5년간('11년~'15년) 연평균 270건씩 노인학대(학대유형 기준)* 지속 발생

* 피해노인 1명에 여러 유형의 학대발생시 유형별 중복 산정

- 학대 유형은 방임 34.6%(의식주 불량), 정서적 학대 25.3%(비난, 폭언 등), 신체적 학대 24.6%, 성적 학대 12.1%, 경제적 학대 3.5%(금전 갈취 등) 順

<'11~'15년 입소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

(단위 : 건, 개, %)

구분	방임	정서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합계
총 발생건수	467	342	332	163	47	1,351
연평균 발생건수	93.4 (34.6%)	68.4 (25.3%)	66.4 (24.6%)	32.6 (12.1%)	9.4 (3.5%)	270.2 (100%)

- 부당청구가 적발된 연간 요양급여 5천만원이상 24개 시설에 대해 식품위생 특별점검(식약처 공동) 결과, 유통기한 경과, 부패 식재료 보관 등 9개 기관에서 13건* 적발

* 유통기한 경과(9건), 종사자 건강검진 미 실시(2건), 부패 식재료 보관(1건), 보존식 미보관(1건)

- 한편, 노보가 적발한 주요 12개 시설의 '16년 노인학대 사례 분석

학대유형	주요 적발 사례
신체	[사례7] 요양보호사가 야간 근무 시 노인 폭행 [사례10]-① 노인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고 폭행
방임 (식품위생)	[사례8] 입소자 방문을 끈으로 묶어 놓고 시설을 비우는 등 방치 [사례9] 부패 및 유통기한 경과한 식재료 등 보관.사용
성	[사례10]-① 다인실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 교체
경제	[사례10]-② 입소자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여 치료비로 사용

(2)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 이용자는 건보가 운영하는 장기요양포털인 '장기요양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기관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나

- 시설·인력현황 수준만 확인할 수 있고 부당청구·노인학대 이력, 재무정보 등 운영실태 정보가 없어 유용성이 낮음

(3) 노인학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미흡

- '15년 노보에서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102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업무정지, 지정취소)이 10.8%(11개)에 불과

<'15년 노인학대 적발 요양기관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개)

구분	조치없음 (개선요구 등)	진행중	행정처분(노인장기요양법상)			합계
			업무정지	지정취소	소계	
기관 수	90	1	9	2	11	102
	88.2%	1.0%	8.8%	2.0%	1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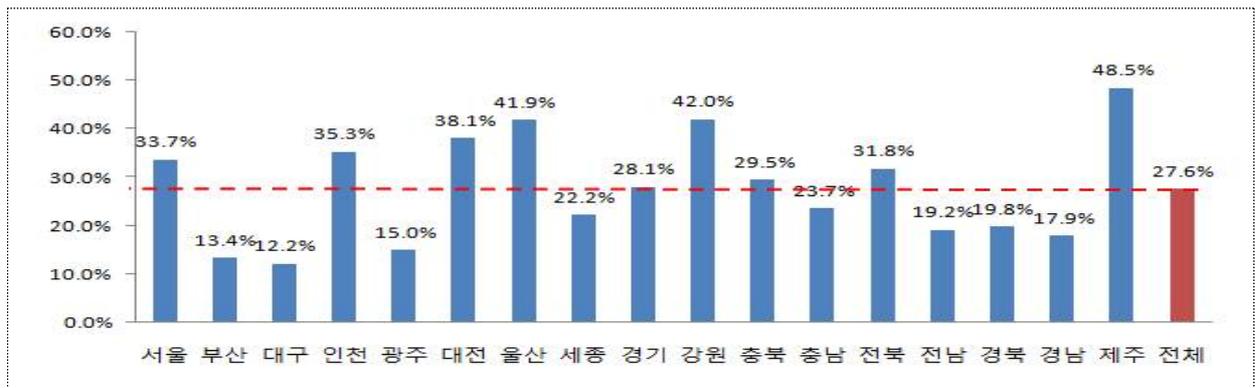
- 지자체는 미조치 사유⁹⁾로 증거부족, 학대의 일회성, 자체시정(피해자와 합의 등), 정서·경제적 학대 제재근거 부재 등 제시

(4) 입소시설 내 CCTV 설치 저조

- 입소시설(16.6 현재 5,101개)에 대한 CCTV 설치현황 점검 결과, 노인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침실까지 CCTV를 설치한 곳은 27.6%임

- 침실을 제외한 공동구역(식당, 복도 등) 설치 34.1%, 미설치 38.3%

- 17개 광역시·도별 CCTV(침실포함) 설치 비율



나. 문제점

-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기준 미흡

-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이상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가 그대로 적용하는 데 애로
- 정서적·경제적 학대에 대한 제재기준 부재

- 시설별 정보가 부족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제약

9) 지자체가 제시한 미처분 사유(26건) : 증거부족 11건, 일회성 사건 7건, 자체시정(피해자 합의 등) 6건, 제재근거 부재 2건 등

4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부실(감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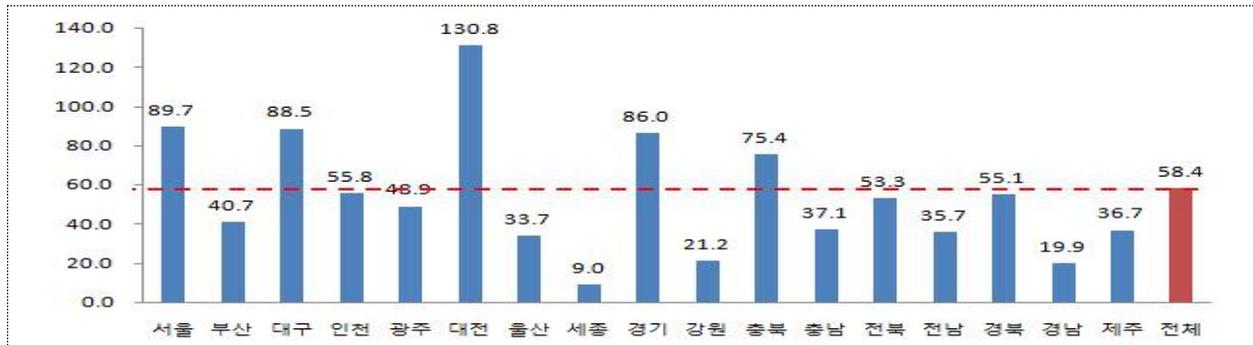
가. 점검결과

(1) 지자체의 감독역량 부족

- '16.6말 현재 전국 지자체(229개)의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자* 1인당 평균 요양기관은 58.4개로 업무 부담이 과다하고, 업무기간이 11.3개월로 짧아 전문성이 부족

※ 대전광역시는 1인당 담당 시설이 130.8개(5명이 654개 담당)로 가장 열악

- 지자체의 69.9%(160개)는 업무담당자가 1명(전국 평균 1.36명)
- 17개 광역시·도별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1인당 평균 요양기관



(2) 부당청구 사실 공표 미흡

- 지자체는 부당청구 금액이 중대(1천만원 또는 부당청구 비율 10% 이상)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재량사항)
- 그러나, 시설 운영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고 공표시 지역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15년 공표대상 233개 중 6개(2.6%)만 공표

나. 문제점

□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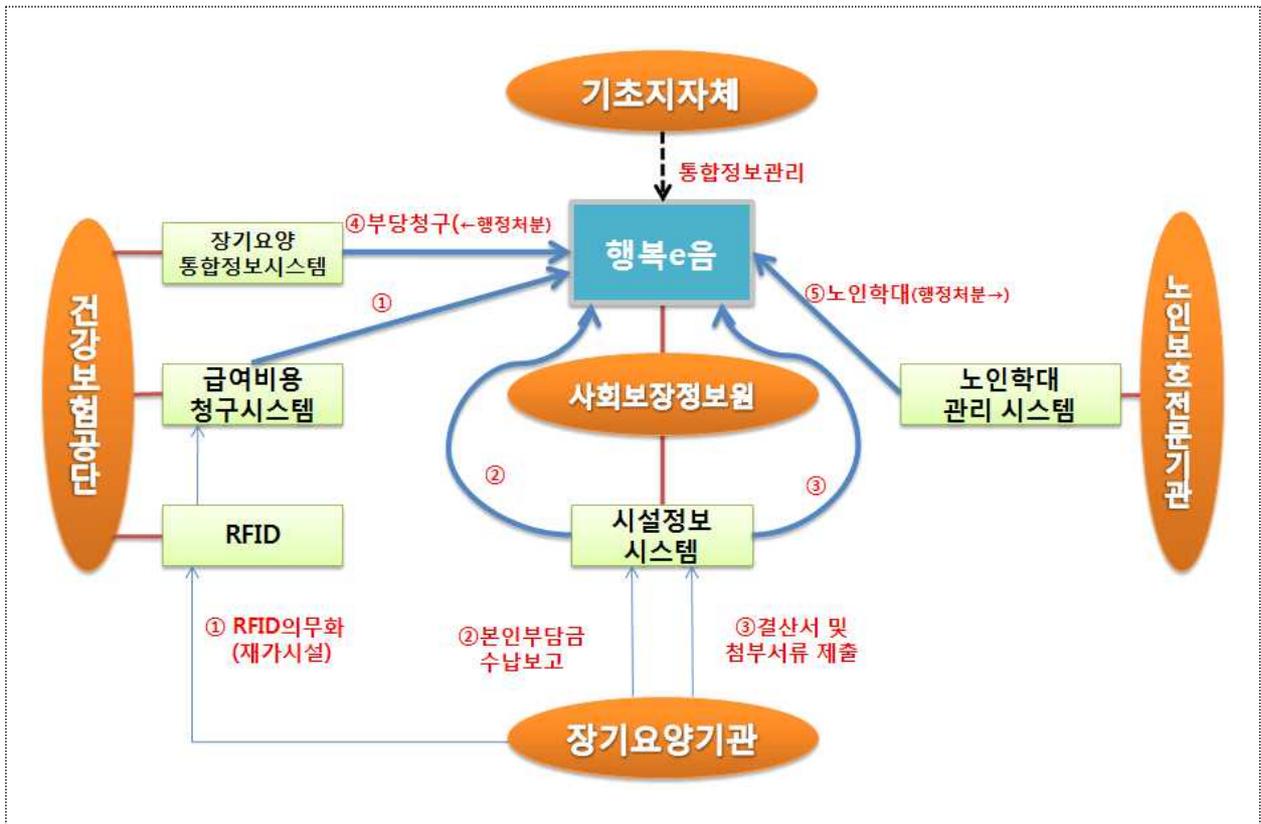
-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불법행위 단속(부당청구, 노인학대 등) 및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주된 감독기관이나
- 장기요양기관에 별도의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업무량 과다 및 빈번한 담당자 교체 등으로 대표적 기피업무로 낙인

III. 장기요양기관 종합 개선방안



1

「장기요양기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구 분	현 행	개 선
재가시설 근무기록	- 수기 관리 - 일부 전자관리(RFID)	- RFID 도입 의무화
본인부담금 수납	- 장기요양기관에서만 관리	- 지자체에 전산 보고 - 노보에 전산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 종합관리
노인학대 발생시절	- 노보에서 수기 관리	- 결산서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
결산자료 관리	- 요양시설 결산서에 대한 지자체의 확인.검증 미흡	- 지자체와 건보.노보 전산연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 연계	- 감독주체별 개별적 업무 수행	
기대 효과	- 부담청구 등 재정비리 빈발 - 요양기관 감독 사각지대 존재	- 재무회계의 투명화, 재정누수 방지 - 요양기관 실시간 통합감독

□ 핵심업무 전산화 및 지자체와 건보·노보 전산 연계로 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 및 감독 효율성 제고

○ 현재 일부 재가시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을 모든 재가시설(방문서비스)에 의무화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수급자 집에 설치된 태그로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점을 건보에 실시간 전송

-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수납현황을 ‘시설정보시스템’(시설 운영지원 시스템)으로 지자체에 전산 보고
- 노보의 ‘노인학대 관리 시스템’을 구축, 지자체의 ‘행복e음’(사회 보장 업무시스템)과 연계
- 결산서 및 첨부서류 중 현재 수기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까지 모두 전산 보고하고,
 - 결산서 주요 내용(요양급여액, 종사자 임금 등)을 건보 자료 등과 비교, 이상여부를 자동검증

2 정보공개 확대로 자율개선 유도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구 분	현 행	개 선
지역별 감독실태	- 감독실태 정보 미공개	- 지역별 감독실태 공표 * 정기평가 등급, 이용자 만족도, 감독인력 등
지자체장의 불법사실 공표	- 재량사항	- 공표 의무화, 공표기준 개선
개별 요양기관별 정보	-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시설·인력현황만 조회 가능	- 조회 가능정보 확대 * 부당청구·노인학대 이력, 재무정보 등
기대 효과	- 지자체 무관심 -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 지자체의 관심제고, 자율적 개선 - 정보확대,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지역별 요양기관 감독실태 공개를 통한 자율적 개선 유도

- 지자체가 ①요양기관 정기평가 등급, ②이용자 만족도*, ③지자체 감독 인력현황, ④CCTV 설치현황 등을 각 지자체·장기요양홈페이지에 게시

* 건보가 매년 전국의 이용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중(서비스 이용 만족도, 건강상태 및 환경변화, 가족부양부담 경감 등)

□ 중대한 부당청구 사실 공표제도 강화

- 중대한 부당청구 사실 공표제도를 의무화하고, 공표기준을 위법사실의 고의·중과실 여부, 위반의 정도, 횡수 등을 감안하여 개선

□ 장기요양홈페이지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실질적 보장

- 장기요양홈페이지에 시설별 휴·폐업이력, 부당청구·노인학대 이력, 재무자료, CCTV설치 여부 등 운영실태 정보 대폭 확대

3 선제적 관리감독 강화로 시설 난립 방지 및 서비스 제고

구 분	현 행	개 선
지정·퇴출	- 시설인력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 - 부실기관 퇴출 불가	- 지정시 요양급여 제공능력 고려 - 직권 지정취소 근거 마련
부실기관 선제적 감독	- 수급자 이전 제한 없음 - 휴·폐업 신청시 현지조사 미실시 - 평가 하위기관 수가감산 미적용	- 수급자 이전 기준 마련 - 휴·폐업 전 현지조사 의무화 - 수가감산 활용
요양보호사, 시설장 교육	- 건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교육 의무화
기대 효과	- 시설 난립, 시장질서 혼탁 - 종사자 질 저하 우려	- 편법영업 근절, 시장질서 회복 - 복지마인드 제고 등 서비스 향상

□ 지정요건·퇴출 강화로 시설 난립 방지

-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신청기관의 급여제공능력(부당청구·노인학대 이력 등)을 고려토록 명문화하고, 특히 재가시설의 지정의제(설치신고와 동시에 지정) 폐지(법제처 심사중)
- 평가거부, 휴면 요양기관 등에 대한 직권 지정취소 근거 마련 (법제처 심사중)
- 명의대여를 통한 편법영업 방지를 위해 시설의 대표자에게 시설 운영 및 행정적·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서약서 징구

□ 휴·폐업, 업무정지 시 관리감독 강화로 편법행위 차단

- 휴·폐업, 업무정지 예정 시설로부터 수급자를 이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자격기준* 마련

* (예)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 : ①정기평가 C등급 이상, ②6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 ③정기평가 이후 부당청구·노인학대 미발생

- 비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현지조사 의무화

*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나 비리가 의심되어 현지조사 대상으로 기 선정된 경우 등

□ 정기평가 하위기관 급여비용 감산 적용 등 선제적 관리 강화

- 법상 감산제도* 적극 활용, 이를 위해 소규모 시설에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의 단일화 된 정기평가 지표를 시설 규모별로 세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건보는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 감산이 가능하나 현재 미적용

-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비율 상향 등*으로 종사자 내부고발 활성화

* (예) 기존 신고자 구분(종사자, 가족, 일반) 폐지, 보상금 지급비율(징수금 2,500만원 이상)을 기존 10%에서 20~30%로 상향 등

□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불법행위 사전 예방

- 요양보호사 등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다른 직종 업무 수행시 그 허용범위를 명확화*

* 복지부 고시로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등이 부재시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으나, '일부 수행'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현장 혼란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근거 마련(법제처 심사중)

* 건보가 수급자의 소득수준 또는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이용여부를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감경·지원

□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로 복지마인드 및 서비스 제고**

- 요양기관에 회계전담직원 지정, 전문화 교육 의무화
- 요양보호사 정기 교육(예 : 연 1회) 및 신설기관 시설장 교육 의무화
 * 복지 마인드, 기본 시스템 운영(요양급여, 재무·회계 등), 요양시설 운영(예산, 종업원 관리 등) 등

4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를 통한 수급자 권익보호

구 분	현 행	개 선
노인학대 발생 시설 행정조치	- 행정처분 기준이 정교하지 않아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조치	-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 지자체의 엄정한 적용 유도
CCTV 설치	-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	- CCTV 설치 확대 검토(중장기)
기대 효과	- 시설내 노인학대 예방 미흡	- 수급자 권익보호 강화

□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 현행 업무정지 3개월 이상과 지정취소뿐인 행정처분 기준을 노인학대 유형,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자체의 엄정한 행정처분 유도
-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정서적·경제적 학대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 **CCTV 설치 확대 필요성 검토 등 노인학대 예방 노력 지속**

- CCTV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진행중*)
 * 수급자·보호자, 일반국민, 시설장·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진행중
- 중장기적으로 CCTV 설치 확대 필요성 검토

⇒ 복지부, 건보, 노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반기별 진행상황을 점진,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IV. 제도개선 방안 세부 추진일정(안)

1.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 도입 의무화('17.하반기)
- 본인부담금 수납현황 전산보고(시설→지자체)('17.하반기)
- 노인학대 관리 시스템 구축('17.하반기) 및 행복e음 연계('18.상반기)
- 결산서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17.하반기)

2.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자율적 개선 유도

-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감독실태 공개('17.상반기)
- 중대한 부당청구 사실 공표 의무화·공표기준 개선('17.하반기)
- 장기요양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정보 확대('17.상반기)

3.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선제적 관리감독 강화

□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및 퇴출 강화

-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및 재가시설 지정의제 폐지('17.상반기)
- 평가거부·휴면 시설 대한 직권 지정취소 근거 마련('17.상반기)
- 대표자의 시설 운영 및 행정적·법적 책임관련 서약서 징구('17.상반기)

□ 휴·폐업, 업무정지 시 관리감독 강화

- 휴·폐업, 업무정지 시 수급자 이전 기준 마련('17.상반기)
- 비리의심 휴·폐업신청 시설 현지조사 의무화('17.상반기)

□ 부실·비리 요양기관에 대한 선제적 조치 강화

- 정기평가 부실 기관 수가감산 및 정기평가 기준 세분화('17.상반기)
- 공익신고 지급률 상향('17.상반기)

□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불법행위 방지

- 입소시설 종사자 업무기준 명확화('17.상반기)
- 수급자 본인부담금 탄력적 운영근거 마련('17.상반기)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의무화

- 회계전담자 지정 및 교육 의무화('17.상반기)
- 요양보호사 및 신규시설 시설장 교육 의무화('17.하반기)

4. 수급자 권익보호 강화

□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 신체·성·방임 등에 대한 기존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17.상반기)
- 정서적·경제적 학대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17.하반기)

□ 입소시설 내 CCTV 설치 확대 검토

- CCTV 설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실시('17.상반기)
- CCTV 설치 확대 필요성 검토('17.하반기~)